

1. 개정이유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어업허가 내역 및 관련자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 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 서식) 삭제
- 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2. 7.)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을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다음”을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이하 “수산물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을 “제2항”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u>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 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u> <u>1.</u> <u>1의2. 「양식산업발전법」</u> <u>1의3. 「어선안전조업법」</u> <u>2. 「수산자원관리법」</u>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u>① <삭 제></u>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
-----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다음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2항 -----

-- 송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